

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· 공포 주요내용

□ 개정 · 공포

○ 대통령령 제31748호 및 제31749호('21. 6. 8)

※ 시행일 : '21. 7. 1부터

□ 고용보험법 시행령

(1) 고용보험 적용 직종 범위 규정(제104조의11제1항)

- ① 보험모집인, ② 가정방문 강사, ③ 택배원, ④ 대출모집인, ⑤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⑥ 방문판매원,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⑧ 가전제품 배송원, ⑨ 방과 후 강사, ⑩ 건설기계 운전자*, ⑪ 화물차주

* 「건설기계관리법」(제3조제1항)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※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(27종) 노무제공자 : 불도저, 굴착기, 로더, 지게차, 스캐리퍼, 덤프트럭, 기중기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· 피니셔 · 살포기 · 믹서트럭 · 펌프, 아스팔트믹싱플랜트 · 피니셔 · 살포기, 골재살포기, 쇠석기, 공기압축기, 천공기, 향타 및 향발기, 자갈채취기, 준설선, 특수건설기계, 타워크레인

(2) 피보험자격 관리(제104조의12제1항)

- 노무제공자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자격 변동 · 상실 등을 관리

※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(법 제118조제1항제1호)

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

(1)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산정(제56조의6제2항)

-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부장관 고시로 정함(예정)

(2)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(제56조의6제3항)

-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균등 부담(요율 1.4%, 각각 0.7%)